



보도시점 2024. 8. 13. (화) 16:00 배포 2024. 8. 13.(화) 10:00

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新성장 산업화

- 4대 분야(·레저장비·계류시설·레저 불편해소·법령기능 정비) 8건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 국내 요·보트 및 소형선박 제작 규제개선으로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 기대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외레저관광객 유치 확대 등 산업발전 전기 마련

○ 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국내에서도 인정하여 A사와 같은 선박 제조사들이 가격·품질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되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추진단은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레저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한다.
 - * 세계관광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UNWTO, '23)
 - * 우리나라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 : ('19) 29.9조원 → ('20) 28.6조원 → ('21) 31.3조원 → ('22) 37.4조원 (KMI 동향분석, '23)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4개 분야별 8개 규제혁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 장비인 요·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산업, IT, 자동차산업 등 연관산업이 모두 발달해 있어 세계 해양레저장비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다만, 국내 선박 제조 현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기자재 기준이 국내법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기자재라 하더라도 국내 사용을 위해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❶ 이에 해양레저선박(플레저보트, 동력수상레저기구)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고, 우리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 또는 그 대행검사기관(주요 국제선급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은 국내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이로써 국내 레저선박 및 소형선박 제조업계에서는 해양레저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선박 제작에 문턱 없이 적용할 수 있어, 국내 요트·보트 등 소형 선박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해외 요트의 수입대체 및 국내 생산 요트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해양레저 기반시설인 마리나항만 등 계류시설 확충 방안

-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절대 부족한 해양레저선박 계류 시설을 조기에 확충, 요트·보트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현재 국내의 요트·보트 등록 척수는 35,366척('23년)으로 매년 2~3,000척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을 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등록 척수 대비 6.8%)에 불과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②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에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 많은 비용(약 1,200억 원)과 시간이 소요(약 6년)되고 있다. 현재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 ③ 또한 국가·지자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요·보트 계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역어촌계와 협의하여 계류시설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어촌을 지역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어촌계와 해양레저사업자 간 상생 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다.

③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

- 주 52시간 근무와 여가 확대, 삶의 질,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레저활동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 ④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면허취득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출석 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⑤ 또한 현행 법령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잠수복을 착용한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나, 부력을 갖춘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또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트를 타고 이동 시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착용한 경우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⑥ 요·보트 등 소형 레저선박을 대여할 때 대여업체 직원이 요·보트에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 프라이빗한 요트 대여가 어려웠으나, 양측의 계약에 따라 선박 조종면허를 가진 임차인도 요·보트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인식을 개선하여 요·보트 대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4 해양레저관광 업무 체계 조정 및 법령 통합

- 해양레저관광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해양레저관광의 각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⑦ 그동안 해수부는 업계의 숙원이었던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규제혁신추진단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수부의 노력, 문체부의 협조로 그간의 숙원과제였던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24.1.30)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해외 레저 관광객 유치 등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 ⑧ 이를 계기로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업무의 중요성 증가에 발맞춰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추진단은 이번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 세부 개선과제 (총 8건)

<참고 2> : 인포그래픽

구 분	부처 및 부서	직 위	직책	성명	연 락 처
담당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	책임자	과장	고현웅	(02-3778-3440)
		담당자	전문위원(PM)	이봉길	(02-3778-3574)
		“	전문위원	김준곤	(02-3778-3577)
		“	“	임광수	(02-3778-3571)
		“	“	박정천	(02-3778-3575)
		“	“	신철오	(02-3778-3493)
		“	사무관	서나영	(02-3778-3442)
<공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수부 총괄>	책임자	과장	홍근형	(044-200-5160)
		담당자	사무관	박수영	(044-200-5166)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선박검사 국제표준 인정>	책임자	과장	남창섭	(044-200-5830)
		담당자	사무관	최영숙	(044-200-5836)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 개발절차>	책임자	과장	최재환	(044-200-5250)
		담당자	서기관	허중호	(044-200-5251)
		담당자	사무관	김용원	(044-200-5255)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요·보트 계류시설>	책임자	과장	김정화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송경석	(044-201-5653)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선장 재선 관행>	책임자	과장	이민석	(044-200-5740)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044-200-5745)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조종면허, 구명조끼>	책임자	과장	김서구	(032-835-2051)
담당자		경정	민은희	(032-835-255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

세부 개선과제 (총 8건)

1.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국제표준 인정 (해양수산부)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 등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 검사기준에 따라 국내 검사 기관에서 별도 검사하여 인정, 검사에 추가적인 시간·비용 등 애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및 선박용물건 검사기준에 국제표준 인정규정 명문화 · 「소형선박 검사기준」 제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기준」 개정 ·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고, 우리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 또는 그 대행검사기관(주요 국제선급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은 국내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사용 가능 (단, 국내에서 인명안전을 위하여 강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선박 제작시 경제성·작업성 개선으로 선박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2. 마리나항만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과 개발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예정구역에 대해서만 가능하여, 까다로운 절차로 민간투자 유치 곤란 ·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등 약 6년 투자기간과 막대한 투자비용 필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시설의 규모에 따라 개발기준·개발절차 간소화 ·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항만의 조기 확충으로 인한 레저선박 계류시설 대폭 확대

3. 노후·유휴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해양수산부)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노후 및 유휴 어항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어촌계와 사전협의 없이 레저선박 어항 내 계류 시 갈등 발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구역 유휴공간에 간이 요·보트 계류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어촌계와 협의 후 설치 추진하여 해양레저관광 안내소 등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방안 추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계류시설 조기 확보 및 쇠퇴 지역어촌계 경제 활성화

4.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개선 (해양경찰청)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에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선진국에 비해 해양레저인구 확대에 장애, 면허취득 규제완화 현장 요구 · 요·보트 조종면허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5일간 80만원대 비용이 필요하여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음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시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면허취득 소요 시간 단축 추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 활동 진입장벽 완화로 직장인 등 해양레저 활동 활성화

5. 수중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해양경찰청)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안전법령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잠수복을 착용한 이용객이 보트를 타고 이동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일괄 적용되어 불편 초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입고 스킨스쿠버를 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이동 시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 불편해소로 국내 수중레저산업 활성화

6. 레저선박 대여시 선장 재선(在船) 관행 개선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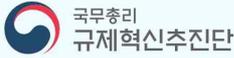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트 등 소형 레저선박에 선장 등 직원 동승 관행으로 프라이빗한 선박대여가 불가능, 레저선박 대여업 활성화 장애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기구 대여 시 임차인이 조종면허 등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 임차인 책임하에 자율 이용토록 현장 인식 개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트 임차인 만족도 증대, 임대업체 인력·비용 절감으로 선박대여업 활성화

7. 해양레저관광 법령체계 정비 (해양수산부)

현행	▶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는 기본법과 산업육성을 위한 진흥법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추진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지장초래
개선	▶ 해양레저관광진흥법(기본법) 제정, 해양레저관광의 개념과 국가 정책 방향 제시, 해양레저관광 정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효과	▶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정책기반 조성

8. 해양레저관광업무 기능 강화 (해양수산부)

현행	▶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에 한정된 현 정책 체계로는 해양레저관광의 중요성과 해외관광객 유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
개선	▶ 해수부 해양레저관광 정책·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업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전문성 확보 및 지속성 유지
효과	▶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요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효율적 대응



규제혁신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신(新)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 4개 분야 8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방안」 마련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요·보트 등 소형선박 시설·물건에 국제표준 인정	
기존	선박 검사기준이 국제표준과 국내기준이 달라 해외에서 승인받은 제품도 국내 별도검사에 비용시간 소요, 제한된 규격으로 세련되고 창의적 제작이 어려움
개선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 물건은 국내 검사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법령 개선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

마리나항만 설치기준·절차 간소화	노후·유휴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선정	인구감소 유휴 어항 내 계류시설 설치,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

**해양레저 이용객
불편 해소**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개선	수중레저 활동자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시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추진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보트를 타고 이동 시 잠수복 착용으로 구명조끼 대체
레저선박 대여 시 선장 재선 관행 개선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조종면허가 있는 임차인 책임 하 프라이빗한 선박대여 가능	

**정책 지원
체계 개선**

해양레저관광 법령체계 정비	해양레저관광업무 기능 강화
해양레저관광진흥법(기본법) 제정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정책·관리 기능 강화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